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682
----------	-----

2022. 3. 22.
자치행정위원회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역봉사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,
개정 내용은 3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먼저, 안 제2조 제5호에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, 안 제5조의2에는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,

업무는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 외에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의3 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음.

본 조례안은 각 리·통에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,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시의 노인복지 시책 안내를 위하여 애쓰시는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그동안 대가 없이 묵묵히 경로당 운영 및 관리 책임을 맡고 계신 노인회장님들에게 작은 보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대상을 각 통·리에 노인회장으로 위촉하도록 강제 규정화시키지는 않았으나 지도원 업무가 노인회장의 고유 업무인 만큼 다른 노인 회원이 위촉되어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로 금번 제1회 추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250,200천원 (50,000×556명×9월)을 편성하여 제출한 상황임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